

토지상 건축물 포함)

- ③ 군 지역 : 900m²이하의 토지(당해 토지상 건축물 포함)
- ④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

판례 :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례(대법원 1996. 5. 14 판결, 96추 15 인용)

○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,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.

○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,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,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○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,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.

○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중 9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이 될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 행사하

자는 것으로서, 공유재산심의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시장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장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, 공유재산심의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고,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지게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,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될 시의원 9명을 의장이 추천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.

17. 管理計劃

가. 意 義

○ 국·공유재산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 등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온 것으로서 1회계년도에 있어 국·공유재산관리 처분의 예정 준칙이다.

○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취득·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(국유재산법 제12조).

○ 반면에 공유재산은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전에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취득·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의의가 있다.